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5,367,613	10,961,028
일반회계	322,364,410	9,670,932
특별회계	43,003,203	1,290,096
공기업특별회계	14,358,404	430,75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358,404	430,752
기타특별회계	28,644,799	859,344
수질개선 특별회계	10,860,616	325,8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002,600	30,078
주택사업 특별회계	4,541,168	136,235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06,228	24,187
자활기금 특별회계	1,908,207	57,246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406,800	252,204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76,097	26,283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10,000	6,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33,083	99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또한 계속비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55,441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2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